

의안 번호	2004~ 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5.
제출자	거창군수

제정사유

- 2004. 1.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-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조례 제정의 목적 (1)
- 주민투표시행과 관련한 군의 책무 (2)
- 0 (3)
- 주민 투표의 대상 (4)
- 투표청구 주민 수 (5)
- 청명 요청 방식, (6 7)
- 청명 보정 기간 (11)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(13)
-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(19)
- 청구인서명부 열람, (10 20)
- 주민투표공표방법 (21)

제정근거

- 주민투표법(2004. 1. 29 07124)

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

제1 ()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(“ ”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() ① 시장군수(“ ”) :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!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 () 20 이상 이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,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

제4 () 법 제7 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읍· !의 명칭 및 구역변경, ,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법 제4 5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· !합
3.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4. 각종 기금의 설치, ,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
5. 법 제7 2 5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
6. 기타 주민의 복리· !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

제5 () 법 제9 2 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 1의 1 .

제6 ()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 3 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법 제10 3 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,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 1 .

제7 () 법 제10 3 1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 10 2 1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 터 90 .

제8 ()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② . 1별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 () 법 제12 1 1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, 청구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다.

- 제10 () ① !수는 법 제12 3 1의 규정에 의하여 읍· !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또는 청구인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!수는 제1 1에 의한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,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- ③ 1 1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.
- ④군수는 법 제12 3 1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 () 법 제12 7 1 10 ! 이 내로 한다.

- 제12 () ① !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 !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군수는 법 제12 3 5 1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 !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, 법 제12 7 1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 !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 2 1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 !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 () ① !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 !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(" "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결한다.

1.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
2.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·결정
3.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·결정
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4 ()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을 포함하여 9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.

② 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5 이상 공무원
2.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
3. , ,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4.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15 () ① 축위원의 임기는 2 , .

② 군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③ 13 2 2 의 규정의 의한 위원 중 결원으로 보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6 () ① |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,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 ()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 1 |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|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|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|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|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8 ()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, .

제19 () ① | 제22 2 |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 8 |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1 제22 2 (공개장소에
 서의 연설회와 대담.) 10 1부터 다음날 오전 7 1까지는
 이를 할 수 없다. 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 1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
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 1부터 오후 11 .

- 제20 () ① 1 제10 1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
 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 .
 ② 1 제10 2 1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 1서식에
 의한다.
 ③제6 2 1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
 은 각각 별지 제3 4 .
 ④제8 2 5 1서식에 의한다.
 ⑤법 제12 1 1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 1서식에 의한다.
 ⑥법 제12 4 7 1서식에 의한다.

제21 () 법 제8 2 , 9 4 , 10 2 , 12
 조제3 , 12 8 13 1 1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 3
 항 및 법 제13 2 1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· . . 1간신문중
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 7 30 .

청 구 인 서 명 부

번호	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서 명 또는 날 인	서명자 일자	비고

※ 작성요령

1. .
2. .
3.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,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.
4.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.
5.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,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,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.

